

규제개혁위원회 안건

의안번호	제 2014-59 호
의 결 연월일	2014. 03. 24. (제 324 회)

의 결
사 항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」
신 설 · 강 화 규 제 심 사 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4. 03. 24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3
1. 중소기업 범위	3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<p>1. 중소기업 범위</p> <p>* 강화</p> <p>* 시행령 제3조제1항, 제9조제5호</p>	<p>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, 자본금(또는 매출액)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하되, 상한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에서 제외</p> <p>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기준을 벗어날 경우 3년 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, 반복적 향유 가능</p>	<p>*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고, 업종별 기준을 재설정</p> <p>⇒(사유) 현행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지표 등은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,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'피터팬 증후군' 등 문제 발생 요인</p> <p>* (법령개정내용)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하되, 경기 변동성을 감안하여 3년 평균치를 적용</p> <p>*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만 부여</p> <p>⇒(사유) 유예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</p>

		<p>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, 반복적으로 항유할 경우 영세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며 제도 취지에도 어긋남</p> <p>* (법령개정내용) 유예는 1회로 한정</p>
--	--	---

II. 규제심사안

1. 중소기업 범위

㉠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*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고, 업종별 기준을 재설정
⇒(사유) 현행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지표 등은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,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'피터팬 증후군' 등 문제 발생
- * (법령개정내용)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하되, 경기 변동성을 감안하여 3년 평균치를 적용
- *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만 부여
⇒(사유) 유예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, 반복적으로 향유할 경우 영세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며 제도 취지에도 어긋남
- * (법령개정내용) 유예는 1회로 한정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----	-----

<p>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</p>
<p>1.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<u>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</u></p>	<p>1. ----- <u>업종과 제7조에 따라 산정한 --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-----</u>. <단서 삭제></p>
<p>제7조(매출액)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<u>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. 다만,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.</u></p>	<p>제7조(매출액) ① ----- <u>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은 -----</u></p>
<p>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</p>	<p>② -----</p>
<p>1.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: <u>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</u></p>	<p>1. <u>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: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</u></p>
<p>2.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</p>	<p>2. <u>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</u></p>
<p>가.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: <u>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</u></p>	
<p>나.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: <u>창업일이나 합</u></p>	

<p>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(1)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</p> <p>(2)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</p>	
<p><신 설></p>	<p>3.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</p> <p>가.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: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</p> <p>나.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: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</p>

	<p>곱한 금액.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) <u>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</u></p> <p>2) <u>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</u></p>
<p>제9조(유예 제외)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</p>	<p>제9조(유예 제외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<u>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	<p><삭제></p>
<p>3. <u>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	<p><삭제></p>
<p>4. <u>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	<p>4. <u>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
<p><신설></p>	<p>5. <u>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후에 중소기업으로 보던 기업이 다시</u></p>

	동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② 규제영향분석서

[분석대상 규제의 개요]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0000017142			
	규제사무명	중소기업 범위	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강화	등록단위	부수적규제	
	성격별분류	경제적규제/진입	유형/구분	기준설정	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중소기업청	제안부처	중소기업청	
	담당부서	정책총괄과	처리기관	중앙행정기관(본부)	
	작성자 인적사항	-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: 유동준			
4. 근거법령명 등	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, 제9조제5호	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
	피규제자	중소기업 감소개수	75	공청회(4회) 입법예고	매출액 기준 상황
	이해관계자	중소기업 편입 또는 제외 기업	약 1,400개 기업	공청회(4회) 입법예고	매출액 기준 상황 또는 하향
	관련부처	시책실시 부처	전부처	부처협의(2회)	자동차, 정보통신 등 특정 업종 매출액기준 상황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: 관련 법률인 『중소기업기본법』에 중소기업 범위 제도에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	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- 현행규제내용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, 자본금(또는 매출액)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하되, 상한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기준을 벗어날 경우 3년 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, 반복적 향유 가능				
	- 신설(강화)규제내용 *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고, 업종별 기준을 재설정 ⇒(사유) 현행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지표 등은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,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				

	<p>‘피터팬 증후군’ 등 문제 발생 요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법령개정내용)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하되, 경기 변동성을 감안하여 3년 평균치를 적용 *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1회만 부여 <p>⇒(사유) 유예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서, 반복적으로 향유할 경우 영세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며 제도 취지에도 어긋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법령개정내용) 유예는 1회로 한정 						
8. 규제체계도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 ↓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초과 ↓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유예기간 경과 기업 ↓</td> </tr> <tr> <td>중소기업 정책대상 ↓</td> <td>중소기업 졸업유예(3년) ↓</td> <td>중소기업에서 제외 ↓</td> </tr> </table>	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 ↓	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초과 ↓	유예기간 경과 기업 ↓	중소기업 정책대상 ↓	중소기업 졸업유예(3년) ↓	중소기업에서 제외 ↓
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충족 ↓	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초과 ↓	유예기간 경과 기업 ↓					
중소기업 정책대상 ↓	중소기업 졸업유예(3년) ↓	중소기업에서 제외 ↓					

[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]

가. 규제의 필요성

1) 문제정의

- **(범위기준)** 현행 상시근로자 수 및 자본금 지표 등은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, 기업의 성장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'피터팬 증후군' 등 문제 발생
 - * 중소기업 범위 경계선에 있는 10개 기업 중 3개는 분사고용 감축 등 인위적 조정을 통해 졸업을 회피('12.12, 전경련)
- **(유예제도)** 기업이 유예 제도를 반복적으로 향유하며 성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며, 이 경우 영세 소규모 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되며 제도도입 취지에도 어긋남

2)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(정부 개입의 필요성)

- 정부는 국가경제의 활력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·육성할 필요가 있으며
 -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의무가 있음
-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,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를 악용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제도개선 필요

- 기업성장 측정 지표 중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가장 적은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하고,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존치하되 향후 1회만 부여토록 개선

* Sheperd & Wiklund(2009)가 기존 연구문헌을 조사한 결과, 기업 성장에 대한 척도로 매출액 60%, 고용 12.5%, 자산 5.8% 등을 활용

(해외 사례)

- 미국·일본·유럽 등 해외에서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범위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이나 종원업수, 자본금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
- 유예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써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음

□ (미국) 1,047개 세부업종(한국 기준 세세분류)에 따라 근로자나 3년 평균 매출액 중 한 가지만 적용

- 근로자는 500명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50~1,500명, 매출액은 7백만\$ 기준으로 업종별 0.75~35.5백만\$ 적용
- 인플레이션이 규모기준(매출액, 소득, 자산)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분석하여 규모기준 조정

업종	적용지표	세부업종별 기준 예시
제조업(364개)	근로자	◦500명(플라스틱 병), 750명(건설기계), 1천명(담배)
도매업(71개)	근로자	◦100명(71개 세부업종 공통)
소매업(69개)	근로자, 매출액	◦50명(연료소매), 7백만\$(정육점)
정보업(32개)	근로자, 매출액	◦500명(신문발행), 35.5백만\$(S/W업)

□ (일본) 4개 업종(도매, 소매, 서비스, 기타)으로 대별하여,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인정(택일주의)

- * 도매업 : 자본금 1억엔 또는 종업원수 100인 이하
- * 소매업 : 자본금 5천만엔 또는 종업원수 50인 이하
- * 서비스업 : 자본금 5천만엔 또는 종업원수 100인 이하
- * 제조업 기타 : 자본금 3억엔 또는 종업원수 300인 이하

□ (유럽연합) 종업원수 250인 미만이고, 매출액(5천만 유로, 약 770억원) 또는 자산총액(4천3백만 유로, 약 650억원) 이하인 기업

나.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(대안 1)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여 중소기업 수를 대폭 확대하거나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, 유예제도도 확대하여 시행

- (장점)

- ㉠ (수요자) 새로이 중소기업에 편입되거나 졸업이 유예된 기업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안정 및 성장에 도움
- ㉡ (공급자) 제도 시행에 따른 반발이 적어 제도 개선 및 의견수렴, 시행이 용이

- (단점)

- ㉠ (수요자)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고, 상대적으로 지원혜택이 축소되는 부작용 발생
- ㉡ (공급자) 정부의 육성·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대형 규모의 기업이 혜택을 향유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저하

- (비용·편익분석) 개정안 비용보다 증가하며, 편익은 감소

- (대안 2)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대폭 하향하여 현행보다 중소기업 수를 줄이고,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를 폐지

- (장점)

- ㉠ (수요자) 중소기업 수의 감소에 따라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 강화 예상
- ㉡ (공급자)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 가능

- (단점)

- ㉠ (수요자) 중소기업 졸업 임계선상의 기업은 지원 단절에 따른 경영애로 봉착 및 성장 중단 우려

㉞ (공급자) 중소기업서 배제되는 중대형 기업의 거센 반발로 인한 개정안 시행 애로

- (비용·편익분석) 개정안 비용보다 감소하며, 편익은 증가

○ (검토의견) 상기 대안 1, 2는 대안별 장점은 있으나,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며, 중소기업 지원제도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음

- 따라서, 중소기업 제외 기업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수준으로, 왜곡 가능성이 가장 적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 현행 개정안이 현실적·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

2)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○ (직접비용) 신규 범위 기준 설정 시, 현행 중소기업 비중 유지를 우선 고려하였으므로 새로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 수는 미미

* 개정 범위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(2012년 기준), 약 75개 중소기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(전체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20만개)

- 신규 범위기준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기존의 혜택에서 소외됨으로써 발생하는 산술적 금액 산출은 곤란
다만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금액 위주로 산정하면 약 3.6억원* 추정(기획재정부 통계인용)

*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평균액(기업당 4.8백만원) × 75개 기업 = 3.6억원

- 기타 행정기관 또는 규제기관(유관기관)이 부담해야 할 조직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,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없음